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민원여권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5
----------	-----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개정 등에 따른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 비율 변경으로 제11조 제2항 개정(안 제11조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9. 30. ~ 10. 20.(20일)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 첨부

3) 비용추계서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부패/인권/성별/아동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반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

구 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성 별 영 향 평 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할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반영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 함한 7명 이내로 하되,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u>구청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u>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비공개대상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표는”를 “사전적 공개 등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표하는”을 “사전적 공개하는”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를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비공개대상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를 “사전적 공개”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비공개대상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표 제3호”를 “별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과반수”를 “3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집행기관”이라 함은 구 본청, 구 소속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및 <u>성북구도시관리공단</u> 을 말한다.	2. ----- ----- ----- <u>성북구 도시관리공단</u>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 제3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u>비공개 대상정보</u>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 ----- ----- -----. ----- <u>비공개 대상 정보</u> ----- -----.
제6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생 략)	제6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u>공표</u> 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② ----- <u>사전적 공개</u> ----- ----- ----- ----- -----

장이 정보공개 및 공표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 공표제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공표 주기·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요 정보공개목록 작성·비치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적 공개하는-----
-----.

제2장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제도

제7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

-----.

- 비공개 대상 정보-----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사전적 공개 -----
-----.

제8조(주요 정보공개목록 작성·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생략)

② 공개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
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제3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략)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운영)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되,
이 중 과반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⑤ (생략)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인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

제10조(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
음)

② -----

----- 별표-----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3분의 2-----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한 차례만 -----
-- . -----

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제18조(시행규칙) -----
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	-- <u>필요한</u> -----
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1/2 → 2/3)에 따른 개정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어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행정국 민원여권과장 김형수